

서울남부지방법원 2024. 11. 28 선고 2024가단8038 판결 [연대보증채무금]

전 문

원고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B

피고C

변론 종결2024. 11. 14.

판결 선고2024. 11. 28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42,815,804원 및 이에 대하여 2024. 11. 6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이소진

별지